

「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」 청년창업지원 AI시제품제작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』의 일환으로 지역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콤플렉스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청년창업지원 AI시제품제작’에 참여할 유능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4월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청년창업지원 AI시제품제작
- 지원대상 : 호남(광주광역시, 전남, 전북, 제주)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ICT분야 기반 우수 AI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
- 협약기간 : 협약일 ~ 2024. 9. 30 ※ 선정일에 따라 협약기간 변경 될 수 있음
- 지원규모 : 5명(팀)
- 사업목적 : 지역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 및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
- 지원내용 :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지원금 40,000천원),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지원 등
- 공모분야 : AI기술을 활용한 ICT분야 ※ 게임 분야 제외
-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

2

신청요건 및 제외대상

○ 신청요건

1. 지원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(1984. 4. 25. 이후 출생한 대표자)
2. 신청자격 :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수료생 또는 ICT 콤플렉스 참여자 또는 멤버십 가입*자
필수(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포함)
* 멤버십 가입 방법 : 공고문 내 붙임 참조
3. 사업장 :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**협약일 전까지** 사업자 등록상 **창업아이템 관련 업종**으로 호남(광주광역시·전남·전북·제주)에 **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**
4. 1팀 1개 과제 지원
※ 타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및 1개 과제 이상 신청 불가
5. **협약종료일까지 목표로 제시한 AI 시제품 제작물이 완성되어야 함**
※ 개발 미완성,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, 성과 목표, 기타 지원자의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※ 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
6. 선정된 팀은 과제 수행 시 관련 간담회,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, 과제 종료 후 성과물 전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
7. 사업 종료 후 성과 조사 요청 시,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함.
8. 2024년 ICT콤플렉스 프로그램 필수 참여 3회
※ 이노베이션클래스,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, AI 어노테이터 교육, 공모전, 모의IR피칭, ICT오픈 네트워크파티, 호남IS 워크숍, 성과 교류회 등 추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.
9. 협약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
※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
※ 중간평가 저조시 잔금 지급을 유예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.
10. 선정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(대표자의 사망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), 인수합병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**6개월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**하여야 함

- 우대사항 : '20~'24년도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디지털 신기술 교육 수료생(AI, 블록체인, 데이터, IoT 과정 중 교육 수료생)
※ 선정평가 시 가점(3점)

○ 신청(지원) 제외대상

- 1. 동일 혹은 유사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**
 - ※ 동일 및 유사 사업화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, 중복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- 2. 부도,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(자)**
 - ※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 후 6개월, 부도·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
- 3. 점수 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, 금융기관 등의 기타 체납 중인 자(기업)**
- 4.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지원한 경우**
 - ※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·도용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(기업) 본인에게 있음
- 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는 자(기업)**
 - ※ 계약위반,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
- 6.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로부터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**
 - ※ 현재 수행기관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는 자(기업)
- 7.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납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**
- 8.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**
 - ※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 유해, 부동산 투기 등)
 - ※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등)
 - ※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: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밖의 결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)의 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9. 협약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전용 계좌 및 카드,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**
- 10. 기타 공고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**

3

프로그램 세부 내용

○ 세부 지원 내용

구 분	내 용
예비 창업 지원	창업 교육(기업정신가, 마케팅, 회계/세무 등)
	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(지원금 : 4천만원/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별도 부담)
비즈니스모델 컨설팅 (연계 지원)	현재 사업현황 진단 및 방향 제시,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리뷰 및 피드백

※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○ 정량적 성과지표

- 필수지표, 자율지표 1가지 이상 선택(추후 증빙 필수 제시)

구 분	지 표
필수지표	시제품 제작 및 시연 1건
	성과교류회 성과물 전시 1건
	2024년 ICT복합플렉스 프로그램 필수 참여 3회
자율지표 (택 1가지 이상)	고용
	지식재산권
	투자유치
	매출
	수출
	인증

※ 상기 지표는 **협약기간 내 발생 기준**으로 하며, 고용은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함.

○ 사업비 구성

- 1명(팀)당 지원금 40,000천원(공급가액 기준 / 부가세 집행 불가)
- 지원 대상자는 진흥원의 요구사항 및 비·세목 간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단계를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함.
- 지원금은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1차 지급(총 사업비의 70%), 중간평가 후 2차 지급(총 사업비의 30%)
- ※ 본 과제는 (재)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, NIPA의 예산 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.
- (사용가능항목) 인건비,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 등 9개 세목

비목	세목	세목정의
인건비	인건비	창업기업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(참여율 100%만 인정, 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)
운영비	일반수용비	자문료, 회계정산수수료(필수 계상), 특허 출원·등록, 사무용품 구입, 인쇄·홍보물 제작, 광고료, 수수료, 교육훈련비 등
	공공요금 및 제세	운송요금,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
	임차료	회의장·행사장, 전산장비 및 SW임차료
	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	일반용역비	행사운영, 구매 대행, 전문 광고물 제작 등의 용역 계약
여비	국내여비	참여기업 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비용(교통비)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회의비, 간담회 등 사업추진과 관련 있는 식대성 경비
연구용역비	일반연구비	SW개발(감리 포함), 학술, 실태조사 등 지식 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

※ A시제품제작지원 사업비 집행 기준 참고

○ 사업비 산정 개요

- 시제품 제작 수행에 직접 관련된 실 소요경비로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
-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비 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이체해야 하며, 회사법인 또는 대표의 통장 등으로 이체 후 거래처 이체는 불인정 됨.
-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'에 명시되었더라도, 시제품 개발 수행에 직접 관련 된 실 소요경비가 아닐 경우 산정에서 제외됨.
-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는 추가될 수 있음.
- 사업비는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으며,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.

○ 사업비 사용 및 관리

- **사업비(지원금)는 반드시 사업비 통장**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, 과제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
-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한 **별도의 신규 계좌(법인명의)를 개설**해야 하며,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
- 협약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·관리하여야 하며,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비 집행 내역은 월별 진도관리 등을 통해 상시집행점검을 받으며,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 내역을 보완하여야 함
 - ※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, **부가세 집행 불가**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하며,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
-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, 사업비 횡령, 유용 또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,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
- 총사업비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**부가가치세,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**은 집행금액에서 **제외함을 원칙**으로 하되, 사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
-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 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, 지출 목적이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함
-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 발급수수료의 경우 사업비 편성 불가

○ 관련 규정

1.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함.

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2호)
-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1호)
-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-250호)
-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)
-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)
-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-226호)
-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57호)
-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59호)
-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61호)
-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61호)

2. 위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용
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23호)
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1호)
-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2호)

- 선정절차 :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

평가자	평가방법	비고
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-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예산집행계획 적절성 등 검토 -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제 책임자 발표 -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	- 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않을 시 탈락

- 해당 신청분야 평가항목 등을 각 과제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하여 선정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
-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**평균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**
※ 신청요건 및 자격, 협약 포기,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 2위까지 선정할 수 있음

- 평가 추진 일정

지원 자격 검토	종합 평가(서류 및 발표평가)	최종선정
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사전 검토	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사전 점검 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진행	고득점자 순 5명(팀) 최종 선정
5월 진행 예정	5월 진행 예정(결과 개별 안내)	선정자(팀)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결과 발표

※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-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술 활용 및 수행능력	○ 사업목적 및 필요성(10)	40
	○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(10)	
	○ 보유 기술의 우수성, 경쟁력, ICT기술 활용 능력(20)	
계획의 우수성	○ 사업목표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(10)	30
	○ 사업추진절차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(10)	
	○ 사업화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(10)	
사업화 가능성	○ 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(10)	30
	○ 성과 확산 전략의 가능성(10)	
	○ 향후 수익 창출 기대 효과성(10)	
합 계		100
우대사항(가점)	○ '20~'24년도 호남권 ICT이노베이션 확산 사업 AI·BC·DT·IoT 교육 수료생	3

5

신청 방법
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imham2@gicon.or.kr) ※ 접수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
- 접수기간 : 2024. 4. 24.(수) ~ 5. 20.(월), 09:00 까지 *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별도 안내 없이 신청 무효 처리함
- 제출 서류

No	구분	제출서류	유의사항	비고
1	공통	· 사업계획서(사업신청서)	· 신청서에 인감 날인 및 자필 서명 필수	
2	공통	· 대표자 주민등록등본	· 공고일 이후 발급분	
3	공통	· 개인 인감증명서	· 공고일 이후 발급분	
4	창업경험 없는자	· 사실증명서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· 공고일 이후 발급분 -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: "~년/월/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" 항목 체크☑ - 증명받고자하는연도 : '23~'24년	
	창업경험 있는자	·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	· 공고일 이후 발급분 (폐업관련 증빙 포함)	
5	공통	·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(총 2부)	· 공고일 이후 발급분	
6	공통	·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· 참여인력 전체	서식1
7	공통	·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	· 날인 필수	서식2
8	공통	· 발표평가 자료 (기타 멀티미디어 파일 포함)	· 발표자료(PPT), 동영상 등 평가 시 필요 자료 제출	
9	공통 (택1)	·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수료증 · 호남ICT콤플렉스 멤버십 가입 확인자료 · 호남ICT콤플렉스 프로그램 참여 확인자료	· 관련 증빙자료	
10	해당 시 (택1)	·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· 전년도 급여명세서 ※ 참여인력 본인 발급서류	· 참여인력의 인건비 적정성 확인을 위함 (전년도:23년도)	
11	해당 시	· 기타 경쟁력을 나타내는 모든 자료	· 관련 증빙자료	

○ 서류 제출 요령

-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며, 서류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 .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- 메일제목 : [팀명_대표자명] 2024년 청년창업지원 AI시제품제작지원 지원
-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능하고,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
2.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
3.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,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
4.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 별 내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며,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
5.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
6.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(인력, 장비, 사업비 등)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

○ 일반사항

- 상기 공고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상기 명시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(기업), 수행자(기업)의 책임으로 우리 원이 책임지지 않음
- 수행기업에 제재 사유 발생(완성된 결과물 미제출, 제작지원금 부당사용, 기타 해약 사유) 시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, 제재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같은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- 발표 평가는 팀(기업)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대표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로 처리하며,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신청자(기업)이 공고문,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·도용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부합하고, '신청 자격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는 아이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이 외 기타 공고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○ 과제 관련 문의 : 창업도약팀(062-350-9353)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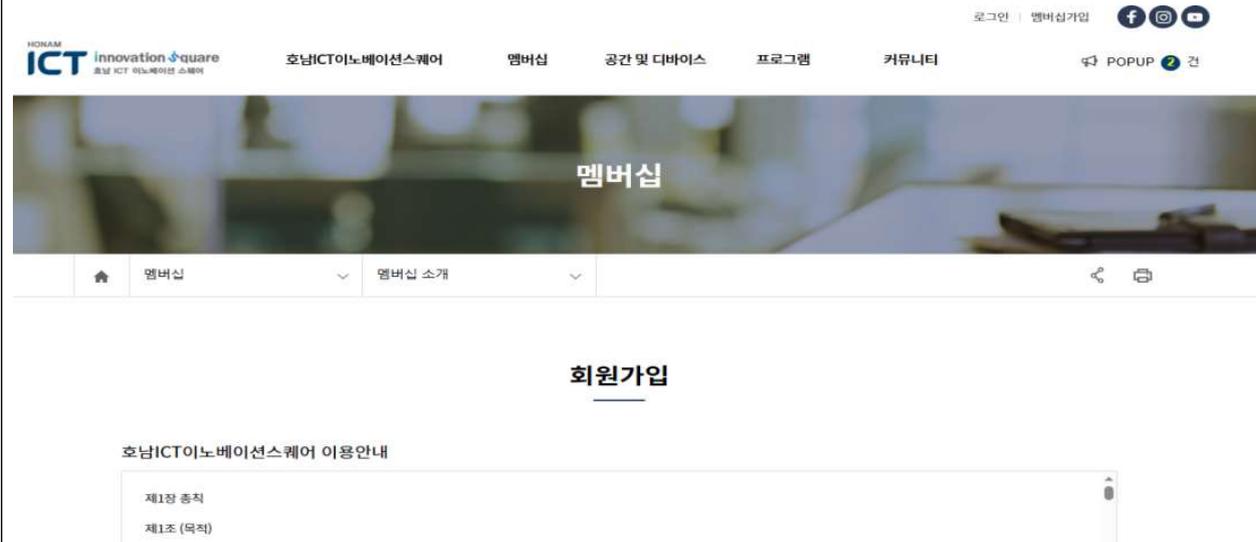
호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멤버십 가입 방법

- 호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접속(<https://www.honamict.kr/>)
→ 홈페이지 상단 '멤버십가입' 클릭하여 회원가입 → 멤버십 가입 완료

▶ 호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상단 '멤버십가입' 클릭



▶ 회원가입 진행



▶ 멤버십 가입 완료

